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3-82

제출년월일: 2023. 5. 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 신설

-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범위(5급→6급) 확대
-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(신설)하여 위원회 관리 효율성 도모
-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/기피/회피 사유 구체적 명시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나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4. 6. ~ 4. 26.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: 원안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안 통보 및 수용
  - ※ 제8조제2항 **"구청장"**을 **"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"**으로 개선
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(2023. 5. 16.)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구청장"을 "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홍보·디자인·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 무원 및 관계 전문가
-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  - 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  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 -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제8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제8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 행정 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---- 성별을 고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려하여 구청장----. 하다. 1. 홍보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업 1. 홍보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업 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</u> 제> 3. 브랜드·마케팅·홍보·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신 설>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구성 ·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 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<삭 제>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. 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 제10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

서 제척된다.

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

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1.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 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

- 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 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
-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
-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 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 다.

<삭 제>
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미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이름	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이정은
연락처	02-3153-8265